제1회 전국모의고사(해설지)

2013년 10월 27일 시행

4과목 :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한국사>

1. 정답 : ①

[해설] (가) 의병(무장투쟁) (나) 계몽운동(교육, 식산운동) (다) 독립준비론(향후 독립전쟁 준비). ② 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은 약육강식의 자연논리를 사회현상에 대입한 것으로 강자가 살아남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것이 계몽운동가에서 친일파가 많이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 ① 제시문은 통감부 시기의 의병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광복군정부는 국권피탈 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권업회(1911~1914)를 모체로 형성된 단체로, 1914년 '제2차 러일전쟁'의 가능성이 무르익으면서 이에 대비해 만든 군사정부 성격의 항일단체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러시아와 한편이 되자 권업회와 더불어 그 해에 해체되었다.

2. 정답 : ②

[해설] 3.1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ㄹ. 3.1운동 이후 '문화정치'가 표방되면서 자치론, 참정론 등이 총독부에 의해 유포되었다. // ㄴ. 3.1운동 이후 설립된 임시정부에서 표방 ㄷ. 3.1운동 직후에는 상해임정이 수립되었다. 민족혁명당이 임정에 참여한 것은 1940년대 중경임정 시기의 일이다.

3. 정답 : ④

[해설] 1920년대의 상황을 묻고 있다. ㄱ. 신경향파 문학대두(1925) ㄹ. 치안유지법 제정(1925) // ㄴ. 조선학운동(1934) ㄷ. 진단학회 창립(1934)

4. 정답 : ④

[해설]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상해임정]** 관내지역에 있었던 임정에 대한 설명이다. 윤봉길의 의거 성공 후 상해임정은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기도 하지만 상해를 벗어나 긴 시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1930년대는 임정 피난기). // ①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외교활동 전개 ② 만주지역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이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갈라졌다. ③ 의열단계통에서 설립

5. 정답 : ②

[해설] 사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성명서>이다. 중경 임정에서 만든 군단이 한국 광복군이다. 광복군은 1945년 미군 OSS 부대와 함께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실행을 거두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 ㄱ. 조선의용대(민족혁명당의 군단) ㄷ. 만주의 조선의용군(양세봉). 만주사변(1931) 이후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1932).

6. 정답 : ④

[해설] (위) 유신헌법(4공, 박정희) (아래) 5공헌법(전두환). ㄷ. 긴급조치권(4공), 비상조치권(5공) ㄹ. 유신쿠데타(4공), 12.12 쿠데타(5공) // ㄱ. 유신은 종신 출마가 가능했고, 5공화국 헌법이 7년 단임제를 택하였다. ㄴ. 국회 간접선거가 아니라, 체육관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4공 통일주체국민회의, 5공 대통령선거인단

7. 정답 : ④

[해설] 제시된 유물은 반달돌칼이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묻고 있다. // ① 신석기 시대 ② 철기 시대(중국식 묘제) ③ 위만조선(철기시대: 철기가 본격적 유입된 시기; BC 2c)

8. 정답 : ②

[해설] (라) 국가가 처음 성립되는 것은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립한 최초의 국가이다.

9. 정답 : ④

[해설] A. 부여(순장), B. 옥저(가매장, 목곽, 가족공동묘), C. 고구려(후장, 송백). ④ 백제는 고구려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세운 나라이다(건국설화와 한성 주변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이를 입증한다).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여계 후손들이다. 실제 성왕은 사비 천도 이후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5c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 // ① 고구려 ② 옥저는 고구려에 복속되어 특산물, 미인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③ 부여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그러다가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하다가 결국 고구려에 멸망당하였다. 고구려는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어 이 당시 위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했다.

10. 정답 : ②

[해설] **[백제-시대사]** 제시된 사료는 4c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으로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4c 근초고왕 대의 상황을 묻고 있다. ① 마한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병합으로 백제의 영역이 전라도 남해안까지 이름 ③ 3c까지 가야가 장악하고 있던 중국(한반도 내 한4군)-한반도-왜를 잇는 고대 해상무역패권을 백제가 장악하게 되었다(백제는 중국본토와 한반도-왜를 연결해 줌). 이로써 한반도에서 가야의 위치는 급락하고 백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백제가 가야에 처음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근초고왕대의 일이다. ④ 처음으로 중국(동진)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② 5c 비유왕 대의 일이다.

11. 정답 : ③

[해설] **[신분제도-골품제도]** 5두품 대나마가 중위제로 9중 대나마까지 승급할 수 있었다. ※ 통일 이후 3~1두품은 평민이 되고, 4두품도 거의 평민화 된다.

12. 정답 : ②

[해설] **[왕대사-광개토대왕vs장수왕]** 나제동맹은 장수왕 평양천도의 결과물이다. // 한강이북 진출(백제 한성점령), 요동장악(후연 격파), 고구려의 신라 간섭기 전개(고구려와 신라의 상하적 관계 형성), 전기가야연맹의 쇠퇴는 모두 광개토대왕 대의 일이다.

13. 정답 : ④

[해설] **[시대사-발해 상경시대]** 발해 상경을 설명하고 있다. 발해가 상경을 수도로 삼았던 시기는 문왕 대 일시, 그리고 성왕대 재천도 후 계속이었다. 발해는 8c 문왕대 일시 상경을 수도로 삼았다가 이내 동경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그러다가 8c 성왕(794-5)대 상경으로 재천도하면서 이후 쭉 발해의 수도가 되었다. 9c~10c는 줄곧 상경을 수도로 하는 시대였다. ㄴ. ㄷ. 9c 선왕(宣王) ㄹ. 10c 발해의 멸망 배경(926년 거란에 멸망) // ㄱ. 8c 전반 무왕대의 일이다.

※ 발해의 천도

고왕	무왕	문왕	성왕(8c말)
· 구국(舊國)에 도읍	• 중경현덕부 천도 (길림성 화룡현 서고성)	• 상경용천부 천도(756년 전반기; 흑룡강성 영안 상경성지) → 안록산 난 영향. 당 장안성과 유사한 구조(주작대로) • 동경용원부 천도(780년대 후반쯤; 혼춘 팔련성) ① 일본도의 시발점 : 일본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자 함 ② 신라도의 시발점(신라-용원부간 39개의 역 존재: 동경→남경→신라)	• 상경 환도[재천도](793말 or 794초)

14. 정답 : ④

[해설] **[수취체제-민정문서]** 제시된 사료는 일본 동대사 정창원(도다이지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장적(민정문서; 촌락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라 서원경(청주) 부근 4개촌을 대상으로 인구, 호, 토지 등을 파악한 것이다. 4개 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촌주는 1인이고, 고려·조선의 호적(戶籍)과 달리 구(口)·호(戶) 외에 토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중세(고려, 조선)에서는 구·호는 호적(戶籍. 3년마다 작성)에, 토지는 양안(量案: 토지대장, 20년마다 작성이 원칙)에 기록하였다.) 이 중 인구(口)는 6등급으로 호(戶)는 9등급으로 파악하였다. 토지는 연수유답, 촌주위답, 내시령답, 관모전답, 마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 우마, 유실수도 기록되어 있었다. ① 인구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파악하였다. 여자와 노비도 파악하였다. ② 출생, 이전 등 인구의 증감이 기록되어 있다. ③ 조용조(토지, 역, 공납) 세금수취를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 ④ 가호(戶)는 인구의 다과(多寡)를 기준으로 하여 9등급으로 파악하였다. (cf. 최근에는 "인구의 다과 및 토지의 다과"를 기준으로 9등급으로 파악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인구의 다과"를 기준으로 나눴다는 견해로 출제되고 있다.)

15. 정답 : ③

[해설] **[고대 사상-불교, 도교]** (가) 불교 (나) 도교. ① 불교의 영향으로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화장이 유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매장이 중요해지면서 산송(山訟)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오히려 풍수지리가 저변으로 확대되어 갔다.) ② 초제(醮祭)란 도교식으로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 데, 고려·조선시대에는 궁궐에서 초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즉 고려·조선 시대까지 궁궐에서 하늘에 도교식으로 제사를 행해오고 있었는데, (※ 원구단 : 원구단은 유교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말하는데 고려 성종대 국내에 들어와 중요한 의례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원간섭기까지 행해졌던 원구단은 사대부들이 제후국의 위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폐기하여 조선시대에는 행해지지 않았다(예외적으로 세조대 정도만 잠시 행해진 사례가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개항기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원구단 행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고종은 원구단(환구단)에서 즉위하였다(하늘에 고한 것임).) 조선조 사림들의 개혁으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다(조광조의 소격서 철폐). // ③ 삼국이 중앙집권체제를 이뤄나가는 데 기여한 사상은 불교이다. 불교는 고대국가 성립(국왕권 강화/중앙집권력 강화)의 대표적인 지표로 본다.

16. 정답 : ②

[해설] **[불교-원효]**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일심사상 통한 종파 통합운동, 화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무애가를 지어 대중교화에 활용 // ① <보현십원가>, 고려시대 균여가 지은 향가 11수이다. ③ 의천, 교·선 통합운동은 고려시대 불교사의 특징. ④ 의상, 화엄종

17. 정답 : ③

[해설] 정여립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정여립은 대동계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한다"라는 말을 퍼뜨리며 난을 계획하였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인 정철에 의해서 많은 동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 때문에 동인은 정철의 처벌을 두고 북인(강경)과 남인(온건)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 ① 대체로 성종~선조 초반. 이 둘간의 대립으로 나타난 현상을 사화(士禍)라 한다. ② 훈척정치에 대한 입장차이를 두고 동·서 분열이 나타나고, 이조전랑직 다툼을 두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고 직접적으로 분당이 형성되었다. ④ 서인 집권 이후 주전파(후일 노론)와 주화파(후일 소론)가 대립하다 호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18. 정답 : ④

[해설] **[조선 정치사-교육제도]** (가) 향교 (나) 서원. // ④ 향교의 특징

19. 정답 : ①

[해설] (가) 남인 (나) 서인 (다) 노론 (라) 소론. // ① 북인

20. 정답 : ②

[해설] **[조선 후기 사상-윤휴(탈주자학적 경향)]** 윤휴(1617~1680)를 설명하고 있다. 윤휴는 사상적으로는 탈 주자학적인 흐름을 보여 주자의 해석에 대해 다른 시도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숙종대 윤휴는 오삼계의 난을 배경으로 북벌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① 안정복 ③ 유형원 ④ 호락논쟁은 노론 내부의 논쟁. 윤휴는 남인. 호락논쟁은 송시열 사후 그 제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논쟁이다. 윤휴는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다.

21. 정답 : ②

[해설] **[10c 왕대사-광종]** 광종대의 개혁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 ㄴ·ㄹ. 국가 재정기반 강화(국가의 대민통제력 강화) ㅁ. 문벌귀족사회는 11c에 성립되기 시작해 무신집권기 붕괴됨

22. 정답 : ①

[해설] **[10c 성종-인물사]** 성종대 최승로의 <시무28조> 내용을 묻고 있다. 이는 대부분 채택되어 성종 개혁정치의 내용이 되었다. 성종대 유교정치 질서 강화를 잘 보여준다. ㄱ. 노비환천법 ㄷ. 유·불의 조화 인정 ㄹ. 상주 지방관 파견 주청 // ㄴ. 연등회·팔관회 제한. 연등회·팔관회 폐지 등 불교식 제례 유교식 제례로 대체(불교 행사의 억제와 유교주의 채택). 유교정치이념 확립 ㅁ. 성종대는 중국(황제국)에 대해 제후국의 체제를 지향하였다. 연호를 주장하지 않았고, 황제국 체제의 명칭을 스스로 격하시켰다. ㅂ. 광군은 정종(定宗; 3대)대 설치된 거란 대비 특수군이다.

23. 정답 : ④

[해설] **[중앙제도-개괄]** 서경권은 언관의 기능으로 낭사와 어사대 관원이 가지고 있었다. // 추밀은 중추원의 재상으로 군국기무(군사기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재신과 더불어 국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

24. 정답 : ③

[해설] **[10c 왕대사-광종]** 제시된 사료는 최승로의 <5조정적평>이다(성종 이전의 5임금을 평가함: 광종에 대해서는 비판적). 밑줄 친 '이 국왕'은 광종을 말한다. 최승로는 성종 이전 5명의 임금을 평하는 글에서 광종의 치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쌍기 등용 이후 공신세력들을 본격적으로 숙청한 것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 // ①② 성종 ④ 경종

25. 정답 : ①

[해설] **[토지제도-고려 토지제도 변천]** 고려시대 있었던 토지제도를 묻고 있다. 고려 건국(918, 태조). 4색공복제 마련(광종). 중국식 문무 18품계 도입(성종). 귀주대첩(거란의 3차 침입; 현종) (가) 역분전(태조) (나) 시정전시과(경종) (다) 개정전시과(목종) (라) 경정전시과(문종) ① 역분전은 아직 관품(관직)이 아닌 인품(성행: 충성도·공훈도)에 의거해 분급한 일시적인 토지제도였다(→논공행상적인 토지분급제도). 즉 아직 관료층을 대상으로 한 토지분급체계가 아니고, 호족계 공신세력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토지분급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 ② 경종대 시정전시과는 국초 호족계 공신세력과 광종대 새로이 등장한 신진세력간 다툼의 타협의 와중에서 나타난 것으로 공신세력에 대한 대우와 새로이 등장한 관리들의 관품에 대한 대우가 모두 규정되어 있다. 즉 인품적 요소와 관품적 요소를 병행한 토지분급 방식이 행해졌다(역분전 요소의 잔존). ③ 산직자가 줄고 현직위주로 지급되었다. 산직자 지급 규정이 완전히 배제되고 현직자에게만 분급되게 된 것은 문종대 경정전시과의 일이다. ④ 11c 거란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또 북방에서 새로이 흥성하는 여진 덕에 무반의 현실적인 지위가 상승하였다. 문종대 경정전시과는 이를 반영하여 무반들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같은 품계일 때는 문반보다 무반이 더 많은 지급을 받게 되었다.

※ 정리 : 고려 전기의 토지제도 관련 상황

태조	<역분전> ·태조대는 호족이든 관리든 자기편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였다. ·토지제도 역시 그러한 배경하에서 충성도 내지는 공훈도에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로 만들어졌다. 이때는 원칙 관계(官階)는 고려되지 않았다(이때의 토지분급은 관직자로서 직무(직역)에 상응하는 대가라기보다는, 국왕과의 친연성(공훈, 충성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경종	<시정전시과> 공신계열(대호족)과 비공신계열간의 대결을 종식시킬 즈음에 나온 공식적인 토지분급제도이다. 처음으로 관직[관계]를 고려한 토지분급 제도였다. 그러나 아직은 공신계열(대호족)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원적 기준 : 직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분급되는 토지제도의 시행 & 여전히 인품적 요소 반영(역분전 요소 남음)
목종	<개정전시과> • 어느 정도 정비된 바탕 하에서 나온 토지제도 ·성종대 중앙정치체제 정비를 반영할 필요 → 토지분급에 18품계가 반영 (이제 18품계만을 기준으로 토지분급 : 일원적인 토지분급 실현) ·국왕과 양반관료층의 '토지분급-충성 관계' 확장 → 한인전 지급(한인까지 포섭) • 거란과의 위기를 반영한 대우규정 → 군인전, (한인전) 지급규정 • 지급액수의 감소 : 현직 위주, 문반 우위 반영
문종	• 이제까지 만들어져 온 제도를 법식화 하는 단계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새로이 공신전, 공해전, 무산계 전시, 별사전 등 추가 • 11c 전란을 겪고 난후 성장한 무반의 지위를 반영해 줌 → <u>무반에 대한 대우 증가</u>(같은 품계일 때는 문반보다 무반의 지급액수가 많음) • 지급액수의 감소 : 현직만 지급, 한외과 소멸

26. 정답 : ③

[해설] **[고려 정치사-중앙제도]** (가) 3사 (나) 승정원. // ㄱ. 중서문하성의 재부는 백규서무를 관장한 최고 관서였다. ㄹ. 6조직계제가 시행되면 더불어 그 권능이 상승한다.

27. 정답 : ②

[해설] **[조선 수취체제-균역법]**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다. 영조대의 정책을 묻고 있다. ㄷ. 서원 대폭 정리, 이조전랑권 혁파 ㄹ. 삼군문 수비체제 마련(도성방어체제 개편: 수성윤음) // ㄱ. 영정법(인조), ㄴ. 장용영(정조)

28. 정답 : ①

[해설] 도성 밖에 한강을 따라 여러 포구가 형성·발전되어 갔다. 특히 이들과 도성을 잇는 거점으로서 도성근처에 이현, 칠패와 같은 신흥시장들이 크게 발달하여, 도성안의 전통적 시전인 종루와 함께 당시 3대 시장으로 꼽혔다. 이러한 현상들이 도성 안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철폐하게끔 하는 외인(外因)이 되어주었다.

※ 금난전권의 철폐

· 배경 : 상업의 발달, 사상의 발달	
내인(內因)	외인(外因)
·정치적: 노론의 자금줄 억제 ·경제적: 시전상인(독점상인)의 횡포 → 물가상승	※ 도성 밖 상업이 발달 ·경강상인 → 한강주변 포구의 발달 ·이현·칠패 : 도성 밖 시장의 형성 → 포구와 도성내를 이어주며 조선후기 종루(전통적인 시전)와 함께 3대시장으로 성장

※ 조선후기 상업발달

조선초기 시전은 주로 왕실과 관청, 지배층의 사치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물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시전이 지배층의 사치품 중심에서 차츰 서울시민의 일상적 수요품을 취급하는 상업기구로 전환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였다. … 한편 전국적 차원의 유통망이 형성되면서 **서울의 상권도 점차 도성 외곽지역은 물론 광주, 수원, 개성, 강화 등지까지 확대됐다. … 금난전권은 한성부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상들은 광주(廣州)의 송파장이나 양주(楊州)의 누원점(樓院店)에 거점을 마련하여 상품을 유통시켰다. 사상들은 합법적으로 시전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주도 아래 상품을 거래시키는 유통체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9. 정답 : ②

[해설] **[조선 후기-지방사회사]** 조선후기 향회가 사족자치기능이 약화되고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ㄴ. 사족층이 군현단위에서 향권을 잃은 후 동리단위에서 동약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ㄹ. 경재소는 조선전기 중앙관직으로 진출한 사족들을 통해 지방의 세력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선조대 혁파되었다(※ 고려시대 사심관제도에서 유래한다).

30. 정답 : ④

[해설] **[개항기-조약]** (가) 강화도 조약(1876) (나) 조미수호통상조약(1882.4: 임오군란 전) (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 임오군란 이후). // ④ 강화도조약으로 처음 외국화폐 통용이 허락되었다.

31. 정답 : ②

[해설] **[개항기-2차 척사운동]** 강화도조약 당시의 척사운동 사료로 최익현의 개항반대 및 왜양일체론 주장이다.

32. 정답 : ④

[해설] ㉠ 독립협회 ㉡ 고종황제. 독립협회 해산(1898년) 후 고종이 취한 정책을 묻고 있다. // ㄱ. 궁내부는 갑오개혁 당시 '궁무와 정무를 분리'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 ㄷ. <대한국국제>는 전제황권을 표방하였다. 입헌군주제, 의회 등 권력분립을 부정하였다.

33. 정답 : ①

[해설] [근대 사학사] (가) 신채호(민족주의 사학) (나) 박은식(민족주의 사학) (다) 정체성론(식민사학) (라) 정인보. ① 민족주의 사학 // ② 사회경제사학(백남운) ③ 사회경제사학(백남운 등) ④ 실증주의 사학(이병도 등)

34. 정답 : ④

[해설] **[무신집권기 민란-향소부곡민의 민란 참여]** 사료는 공주 명학소(所)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1176, 정중부 집권기)이다. 무신집권기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곡에서 민란이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 명학소는 충순현으로 승격되었다. 무신집정자들은 민란에 대해 탄압 일변도로만 대처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향소부곡을 일반군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하였다. // ① 최씨 집권기에 일어난 삼국부흥운동(신라, 고구려, 백제)이 과거 왕조 부흥을 목표로 하였다. ② 묘청의 난은 고려전기인 12c 인종대의 일이다. ③ 만적의 난(1198, 최충헌 집권기). 최충헌의 가노(家奴)로 노비의 신분해방을 목표로 봉기하였다(※ 정권탈취를 목표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35. 정답 : ④

[해설] 홍경래 난이다. 서북지역은 중앙의 차별로 사족층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36. 정답 : ③

[해설] 이론(異論)과 같은 논리를 갖는다. 북벌론은 화이론적 세계관의 대표적인 반영이다. 북학파(동론)는 화이론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화이론적 세계관(북벌론적 세계관)은 "조선중화주의"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북벌론 형성과 발전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북인집권 ·실리외교 펼침 (명·청중	·서인집권 (+남인참여) ·인조의 강	**·북벌론 최고조** - 어영청 중심 - 서인 송시열·송준길·이완		·윤휴(**남인**)**가 주장**(청국오삼계의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립외교) → 반정 명분제공	경책 (주전파득세) → 호란발생·인조의 굴욕 (삼전도 굴욕)	주장(↔남인반대) →나선정벌(러시아)로 이어짐 ※ 벨테브레(박연)		난이 배경) (↔서인반대)

⇨ 이처럼 북벌론은 **집권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숙종대 이후 시들해지면서, **오히려 18c에는 "북학론"(청을 배우자)**이 나타난다.

37. 정답 : ①

[해설] **[조선 수취체제-균역법]** 균역법에 관한 설명이다. 군역 담당자의 부족, 족징, 인징 등 군역의 문란으로 반포된 것이다. // ① 군역 부담의 과중과 군역 문란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 비에게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노비를 군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지방군인 속오군에는 군역 대상에 포함되어 국역을 담당하였다.

38. 정답 : ③

[해설] (가) 동사강목(안정복) (나) 해동역사(한치윤) (다) 연려실기술(이긍익). ㄱ. 한치윤 해동역사 ㄴ. 안정복 ㄷ. 이긍익

39. 정답 : ①

[해설] **[개항기-일본의 국권침탈]** (가) 한일의정서(1904.2: 러일전쟁 직후, 공수동맹 강요) (나) 제1차 한일협약(1904.8: 고문정치) (다) 제2차 한일협약(1905.11: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라) 제3차 한일협약(1907.7: 정미7조약, 행정권 박탈(차관정치)) (마) 간도협약(1909)

40. 정답 : ②

[해설] **[개항기-대원군집정기 : 호포법]** 제시된 사료는 흥선대원군이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호포법을 설명한다(양반에게 군역 부과 실현: 양반과 상민의 역균등화). // ② 47개의 서원을 남기고 철폐하였다(화양동서원도 철폐하였다).

<형법>

1. 정답 : ②

[해설] ① × :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② ○ :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판 2004.11.11. 2004도4049)

③ × :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유추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소추조건(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은 실질적으로 객관적 처벌조건이나 인적 처벌조각사유와 근접해 있는 문제영역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은 금지된다(대판 1997.3.20, 96도1167, 전원합의체판결).

④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2.3.22.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2. 정답 : ④

[해설] ① **개정형법 제296조의2**에 의하여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모든 죄에 대하여 **세계주의**를 택하였다. 따라서 A에게는 우리형법이 적용된다.

② B는 **형법 제5조 제6호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형법이 적용된다.

③ C는 형법 제207조 3항에 해당하고 **제5조 4호의 보호주의**에 의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④ D는 **미국에서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였는데 **판례**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6.9.21. 2006도5010)

3. 정답 : ①

[해설] ㄱ. ○ :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제308조, 제312조).

ㄴ. × :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제344조, 제328조 제1항).

ㄷ. ○ :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의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4조, 제328조 제2항). 이런 경우를 상대적 친고죄라고 한다.

ㄹ. × : 개정형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의 죄에 관한 친고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ㅁ. × : 장물범과 본범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365조 제2항). 그러나 그 이외의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친족간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정답 : ③

[해설] ① ○ : 대판 1996.9.6. 95도2551

② ○ : 대판 2006.4.28. 2003도4128; 대판 2008.2.28. 2007도9354

③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과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8.3.27. 2008도89)

④ ○ : 대판 2008.2.28. 2007도9354

5. 정답 : ②

[해설] ① ○ :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6.7.8. 86도1048)

비교

운전자가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꽂아 둔 행위와 본건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인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대판 1971.9.28. 71도1082)

② × :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89.9.12. 89도866)

③ ○ :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술당시에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대판 1990.12.11. 90도694)

④ ○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판 2001.6.1. 99도5086)

6. 정답 : ①

[해설] ㉠ ×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大判 1995.1.24, 94도1949)

비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大判 1970.1.27, 69도2260)

㉡ ○ : **오상방위의 경우에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안중을 둔 객체를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된다. 따라서 고의의 이중적 기능은 오상방위의 사례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사례에서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하므로 두 학설 사이에 차이가 없다.

㉣ ○ : 대판 2005.4.29. 2003도6056

㉤ ○ : 대판 2005.8.19. 2004도6859

7. 정답 : ④

[해설] ① ○ : 과실범의 경우에는 고의범처럼 결과발생을 인식·인용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형법상 처벌규정도 없다.

② ○ : 교사범과 종범은 모두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 :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형법상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그리고 간접정범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태의 핵심형상을 지배하여야 하는 바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 :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사례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게 되면** 동시범으로서 제19조에 의하여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은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되어 형사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사례에서 개별적으로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관여자들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형사처벌의 흠결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의 범위를 넘어가는 타인의 과실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8. 정답 : ④

[해설] ㄱ. ○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ㄴ. × : 강도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례처럼 강도의 예비단계에서 과실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강도예비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ㄷ. ×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내지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참고

형법상 '중~~죄'는 중체포·감금죄를 제외하고는 ①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②구체적 위험범의 성격을 갖으며, ③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ㄹ. ○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00.5.12. 2000도745)

ㅁ. ○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판 1993.10.8. 93도1873)

ㅂ. ○ :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판 2008.4.24. 2007도10058 참조)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9. 정답 : ③

[해설] ① ×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하나의 요건으로 포섭한다.

② × :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의 판단**은 방위행위시가 아니라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래의 침해를 예견하고 미리 방어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절도범이 침입할 때 방어장치가 작용한다면 예방적 정당방위가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대한 정당방위가 된다.

③ ○ :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적 과잉방위 규정**은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에 존재한다(형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참조).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 벌하지 아니하는 불가벌적 과잉방위 규정은 긴급피난에는 존재하나, 자구행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 : **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10. 정답 : ③

[해설] ① ○ : 대판 1970.7.21, 70도996.

② ○ : 대판 2007.5.10. 2006도4328

③ × : 자구행위는 보전이 가능한 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 등은 여기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에 동인을 구타한 경우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12.30. 69도2138)

④ ○ : 대판 2011.7.14. 2011도639

11. 정답 : ③

[해설] ① ○ : 대판 2007.2.8, 2006도7900.

② ○ : 대판 1990.6.26, 90도887.

③ ×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90.8.14, 90도1328).

④ ○ :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2.27, 97도3421).
즉, 소년법에 있어서의 소년인지의 판단시기는 사실심판결선고시(=항소실판결선고시)이다.

12. 정답 : ③

[해설] 설문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가 원인행위에 있다는 견해들로 **전자는 구성요건모델설(=일치설)의 입장**으로 A, B, D가 그 내용이고, **후자는 예외모델설의 입장**으로 C, E, F가 그 내용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문제는 순서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각 견해가 취하는 내용들만 찾아서 두 가지 분류군으로 형성하여 지문을 찾으면 된다.
정확한 순서는 ㉠부터 ㉤까지 D, B, A와 F, E, C가 들어가면 옳은 지문이 된다.

13. 정답 : ③

[해설]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유형 중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서만 결론을 달리한다**.

① × :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사실은 대상의 착오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불능미수 즉,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두 견해 모두 위험성 여부에 따라 불능미수범 내지 불능범으로 처리하므로 차이가 없다.

② × :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③ ○ :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로서 **오상피난에 해당**한다.

④ × :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14. 정답 : ①

[해설] 가. ○ : 공동정범 및 합동범의 경우에는 공모자 중 1인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면 공모자 전원에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을이 병을 폭행·협박 함으로써 특수강도(합동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현장에서 망을 본 갑에게도 특수강도죄(제334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나. ○ :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9.8.20. 2009도3452)

다. ○ :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9.9.24. 2009도5595)

라. ×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폈을 뿐이고 나아가 위 지하실에까지 침입하였다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그에 접근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창문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지하실에 실제로 값비싼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지하실에 놓여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특수절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판 2010.4.29. 2009도14554)

마.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5. 정답 : ④

[해설] A. × : 형식적 객관설은 엄격한 의미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형적인 행위 또는 그 일부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폭행 내지 협박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B. × :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예비의 중지만이 문제된다.

C. ×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살인죄는 기수가 된다.

D. ○ : 중지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자의로 중지한 자만이 형벌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공동정범자는 장애미수의 책임을 진다.

16. 정답 : ④

[해설] ① × :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부정설도 있으나, 예비죄의 성격에 관한 독립범죄설은 물론 발현형태설에 의하더라도 예비죄 자체의 실행행위는 긍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79.5.22. 79도552; 1978.2.28. 77도3406)

② × :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乙, 丙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9.10.29. 2009도7150)

③ × :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학설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하나 **판례는 부정**한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④ ○ : 방조자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인용하여야 하므로 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과실범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경솔히 흉기를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임웅, 462면; 배종대, 651면). 또한 **예비죄의 방조범이 문제되나,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대판 1976.5.25. 78도1549 참조). 따라서 甲이 부주의로 놓아둔 도구를 乙이 이용했더라도 甲을 통화위조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17. 정답 : ③

[해설] <참 고>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의 경우에 ㉠외부관여자가** '처벌되는 대향자에게 관여한 경우'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나, '처벌되지 않는 대향자에게 관여한 경우'에는 당연히 적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하고, **㉡내부관여자에 대하여**는 즉, 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① × :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② × : 이와 같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3994).

③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중략)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9.13. 2012도5525)

④ × : **자살교사죄(제252조 제2항)는** 피해자의 자살을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특별히 독립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죄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에 대한 특칙이므로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 정답 : ①

[해설] ① ○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판 2000. 7. 28. 2000도2466).

② × : 의사의 상호연락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으나 편면적 종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③ ×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0.4.7. 2000도576).

④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법이 될 수 없다(대판2003.10.30. 2003도4382).

19. 정답 : ①

[해설] A. × :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판 1989.10.24. 89도1605)

B. ×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 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후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5.8, 2008도198).

※ 피고인은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하여 이를 담보하는 양 설정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양도해 주고, 피고인 2로 하여금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허위로 양도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판결 이유 중).

C. ○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질권설정으로 인한 배임죄와 별도로 예금인출로 인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3.2.28. 2012도 15689).

D. ×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E. × : [다수의견]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합).

<관련판례>

1.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도 바뀐 전합 판례에 의하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11.29. 96도1755)
2.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도 바뀐 전합 판례에 의하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3.24. 2000도310)

비교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3.3.9. 92도2999)

20. 정답 : ②

[해설] ① ○ :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판결).

② × :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대판 1982.9.14, 82도1702).

③ ○ :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누범전과가 되므로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대판 1970.9.22. 70도1627)

<누범과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에서 전범에 대한 형선고의 유효성 여부>

1. 누범가중에서의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의 유효 여부

①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②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실이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불과하므로 **누범전과가 된다**.

2. 집행유예에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의 유효 여부

유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누범과 동일**하다.

3. 선고유예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의 의미

① **여기서의 전과는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일반사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된 전과(判) 등이 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된다.

② **다만, 선고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을 경우에는 선고유예 결격사유로서의 전과가 되지 않는다.(判)**

---

④ ○ :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대판 1982.5.25, 82도600).

21. 정답 : ④

[해설] ① × : 생부인 甲이 혼인외의 출생자인 A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대판 1989.10.27. 89므396), 甲은 A의 법률상의 직계존속이다. 따라서 **A가 甲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 : [1]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1.29, 2007도8333, 2007감도22).

비교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81.10.13. 81도2466)

③ × : 자살관여죄(제252조 제2항)는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多), 본인이 자살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문의 경우 甲에게는 자살교사미수죄가 성립한다. 자살관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자살행위시설을 **따르더라도 자살관여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④ ○ : 생모는 혼인 외 출생자에게 당연히 직계존속이며(대판 1980.9.9, 80도1731), 친구를 시켜 존속을 살해했다면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22. 정답 : ①

[해설] ① × :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8.7.24. 2008도4658).

② 甲은 A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甲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③ ○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④ ○ :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23. 정답 : ④

[해설] ① × :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판 2011.9.29. 2010도5962).

② × :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6.21. 2010도14328 전합).

③ × : 2013.3.5에 개정된 형법은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였다.

④ ○ : **행위의 객체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존재하고, **행위의 객체가 성년인 경우**에는 약취·유인은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이다.

24. 정답 : ②

[해설] ① × :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판 2009.9.24, 2009도6687).

② ○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③ × : [1]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7.12.14, 2006도2074).

④ ×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판 2011.8.18, 2011도6904).

25. 정답 : ④

[해설] ① ○ : [1] 피고인이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에 관한 파견감독관의 부지를 이용하여 예금채권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의 위 행위가 甲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임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3.1.24. 2012도10629).

② ○ : 甲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자 한 내용과 설명회 전 다른 지역 순회설명회에서 표명한 발언 내용 및 그러한 발언 등이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당초 예정된 파업의 정당성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설명회 개최가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파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그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설명회 개최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3.01.10. 2011도15497)

③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05.24. 2009도4141).

④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본 것은 잘못이나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12.5.24. 2011도7943)

26. 정답 : ④

[해설] ① × :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3.11, 2009도5008).

② ×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5.8, 2007도11322).

③ × :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12.13, 2007도7247).

④ ○ : [1]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한다.
[2]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7.11.15, 2007도6990).

27. 정답 : ①

[해설] ① ○ : 보석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타인이 찾지 못할 구멍에 감추어 둔 때에 그 보석반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② × : 피고인 甲이 A의 사망 전부터 아파트에서 A와 함께 거주하였고, A의 자식인 B 및 C는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다가 A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나, B 및 C가 A의 사망 후 피고인 甲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甲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B 및 C가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甲의 행위가 B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4.26. 2010도6334)

③ × :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4.14. 2011도300,2011감도5).

④ × : 아직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전에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절도미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28. 정답 : ③

[해설] ① ○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3.2.28. 2002도7335).

② ○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2.8.23. 2001도5592).

③ × :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행위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판 2004.10.28. 2004도4437).

④ ○ :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29. 정답 : ③

[해설] ① ○ :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② ○ :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9.6. 2006도3591).

③ × : 甲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甲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고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한 사안에서, 위 예금의 예금주가 甲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5.13. 2009도5386)

④ ○ : 피고인 甲과 피고 乙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甲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甲은 다른 피고들에게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피고 乙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다른 피고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피고 乙은 원고인 피고인 甲의 주장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전 소에서의 피고인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소송사기가 된다.(대판 1991.8.27. 91도1524)

30. 정답 : ②

[해설] A. ×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도3245).

B. ○ :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2.12.10, 2001도7095).

C. ○ :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갑 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갑 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갑 회사 경영진의 반응,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 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3.4.11. 2010도13774).

D. × : 피고인 등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

E. ○ : 피고인이 환지계장의 신분으로서 피해자 甲이 도급받은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甲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여하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현 실정으로 보아 피고인이 甲에게 금 300,000원의 차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우정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甲에게 금 300,000원을 요구하여 甲이 위 금액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비록 차용이라는 용어를 썼어도 실은 묵시적으로 공갈을 하여 위 금액을 갈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1974.4.30, 73도2518).

31. 정답 : ②

[해설] ① × :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1.11.24. 2010도5014).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시이다.

② ○ : 구 국민연금법(2009.5.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8.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11.2.10. 2010도13284).

③ × :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6.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

④ × :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갑 주식회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2.1.12. 2011도12604)

32. 정답 : ③

[해설] ① ×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7.12.22, 87도2168).

② × : 대판 1970.9.29, 70도1668. 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타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6.11.23, 76도3067).

④ × : 회사 대표가 계열회사들 소유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자기 소유 자금과 구분 없이 거주지 안방에 보관한 행위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횡령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이를 일률적으로 회사 대표 개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로서의 은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대판 2007.6.1, 2006도1813).

33. 정답 : ①

[해설] ① ○ :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직원들이 이후 계약에 기초하여 갑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여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줌으로써 비로소 갑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1.24. 2010도11394).

② × :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주었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였던 점, 갑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렀던 점,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갑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9.13. 2010도11665).

③ ×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4.24, 2006도1202).

④ ×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12.8. 2005도8105).

34. 정답 : ③

[해설] ① × : 피고인들과 甲 회사, 乙 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가등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6.30. 2011도1651).

② × : 법상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이 허가요건을 갖춘 丙 명의로 허가를 받으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6.30. 2011도614).

③ ○ : 乙과 丙 사이의 토지 매매는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었던 매매로서 丙은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더라도 병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1.27. 2009도10701).

④ × :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35. 정답 : ②

[해설] ㄱ. ×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1.21, 85도2472).

ㄴ. ○ :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0.12.9. 2010도6256).

ㄷ. × : 공소외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구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4.4.16, 2004도353).

ㄹ. × :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9.3.26. 98도3030 판결).

ㅁ. ○ :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 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판 2004.3.12, 2004도134).

36. 정답 : ③, ④ (복수 정답)

[해설] ① ×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1.12.8. 2010도4129).

② × : 피고인이 처 甲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甲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乙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2.8.30. 2011도2252).

③ × :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6.28. 2012도3999). 즉 반대해석상 **가압류 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1.10.13. 2011도6855).

37. 정답 : ③

[해설] ① ×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6.4.26, 96도485).

② ×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 :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④ ×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大判 1996.4.26, 96도485).

38. 정답 : ②

[해설] ① ○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

② × :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1.7.14. 2010도1025).

③ ○ :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2012.9.27. 2012도7467).

④ ○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사안의 경우 **위조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의 위조가 성립되며 또한 위조공문서의 행사죄가 성립한다.

39. 정답 : ④

[해설] ① ○ : [1]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2]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2.8.23. 2011도12639).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2.8.23. 2011도12639).

② ○ :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7.2.28. 96도2825).

③ ○ :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7.26. 92모29).

④ ×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12.24. 92도3334).

40. 정답 : ③

[해설] ① ○ :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한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피무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진정서에 피진정인이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그 진정 내용은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그 회의록의 작성권한을 가지는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그 피진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대판 2006.6.9, 2006도417).

② ○ :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갑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2.8.30. 2012도6027).

③ × :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8.12.24, 2007도11137).

④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행정학>

1. 정답 : ④

[해설] ①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별도의 국회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② 예산의 배정은 재정통제에 속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약없이 이월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답 : ④

[해설] ④ C. J. Friedrich는 공무원의 책임으로서 내재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책임을 공무원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자율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3. 정답 : ③

[해설] ③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상재적 평등주의)하는 인사제도는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실적주의에 해당한다.

4. 정답 : ②

[해설] 신행정학은 가치문제를 중시하였다. 가치와 규범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윤리성이 짙은 또는 인간애를 담은 규범적 이론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5. 정답 : ②

[해설] PPBS가 강조하는 경제적 합리성 때문에 정치적 합리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성이 훼손되는 것을 개탄하였다.

6. 정답 : ②

[해설] 틀린 보기는 ㉡과 ㉣이다. ㄴ.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한다. ㄹ.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

7. 정답 : ①

[해설]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스웨덴에서 1809년 이후 발전된 제도이이다. 옴부즈만이란 어의상으로는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옴부즈만은 주로 행정의 부정의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는 자율적이며,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8. 정답 : ④

[해설]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인·허가를 부여해 주는 정책으로, 많은 이권이 걸려있는 서비스나 용역을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체, 단체에게 부여하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규제 장치를 부여하는 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9. 정답 : ②

[해설] ② 과정이론은 욕구 충족이 바로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즉, 인간은 각기 다른 주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동기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가져온다고 보지 않았다.

10. 정답 : ③

[해설] ③ 현대행정학은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천적이고 가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행정은 정치적 성격이 포함된다. ④는 왈도 교수의 주장이다.

11. 정답 : ①

[해설] ① 모두 맞는 지문이다. ㉣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는 많은 법적 제약과 예산제약 때문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NGO는 자치성·탄력성·자율성 때문에 정부보다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NGO와 정부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정부의 개입은 NGO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NGO의 활동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이 된다. 즉, 정부는 NGO가 실패한 분야에 대해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12. 정답 : ④

[해설] ④ 예산심의에서 본회의보다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행정의 전문화 경향과 함께 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① 국회에서 예산안은 다음회계년도 30일전(법정기일)까지 의결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흔하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이다. ② 예산안의 심의는 위원회 중심이며 이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③ 우리의 경우 예산은 법률과 형식이 다르다. 우리는 의결주의이므로 조세는 영구세주의이다.

13. 정답 : ②

[해설] ② 다원적 조직에서 가장 갈등수준이 높다. Cox, Jr.는 문화론적 시각에서 조직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획일적 조직	문화적 이질성이 배척되고 단일의 강력한 문화가 지배하는 조직
다원적 조직	구성원들의 문화적 이질성이 높은 조직으로 다른 문화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만 집단간 갈등수준은 상당히 높다.
다문화적 조직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으로 집단간 갈등은 최소화된다.

14. 정답 : ③

[해설] 보기는 각각 쟁점화(사회적 이슈)와 공중(체제, 환경, 토의)의제에 해당한다.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이므로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즉, ②에서 사회문제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고, ①에서 정부의제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문제를 말한다는 것이 그렇다. 나머진 이 들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연결해 두면 된다.

15. 정답 : ③

[해설] ③ 관료제는 고도의 전문가를 요청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전문가는 극히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서 시야가 좁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이해의 신축성이 적어 폭넓은 관리자로서 부적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① 관료들은 보신을 위해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관의 명령·지시에만 맹종·영합하면서, 본질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쇄신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② 관료제는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현상유지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변동에 대한 적응성·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④ 관료제에서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부처·국·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기관과 부서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과적으로 횡적인 조정·협조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할거주의)이 나타난다.

16. 정답 : ②

[해설] ①은 개인주의적 과정설의 내용이다. 집단주의적 실체설은 공익이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시키는 견해이며 개인들의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개인적 이익은 공동체의 공동선에 종속하는 것이며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③과 ④는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다.

17. 정답 : ④

[해설] ④는 직위분류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ⅰ) 인간경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ⅱ) 인적자원 활용에 주는 제약이 크다는 것, ⅲ) 일하는 사람의 안목을 편협하게 하며 관리자의 양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 ⅳ) 무미건조한 직무설계는 일하는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사람의 권태감·소외감을 키운다는 것 등이 있다.

18. 정답 : ③

[해설] ③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 형태를 통해 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묵시적 바우처는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공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9. 정답 : ②

[해설] ②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공공재의 공급 여부 등에 대해 근본적 시각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대체적 관계란 정부의 공공재 공급역할을 비영리단체가 담당하면서 재화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20. 정답 : ④

[해설] ④ 세출예산이 예산으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또는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

21. 정답 : ④

[해설] ④ 인간이 조직의 구조나 경제적 유인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보고,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22. 정답 : ③

[해설] ③ '전직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는 직권면직의 사유이다. ④ [○] 파면은 강직퇴직 처분으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일부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23. 정답 : ④

[해설] 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과소보상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투입감소, 준거인물변경, 조직이탈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③ 적극적 강화란 바람직한 행동시 행동자가 원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으로 승진, 칭찬, 급여인상 등의 방법이 있다. ④ [×] 전통적 동기부여이론은 개인의 만족도에 의해 근무성과가 결정된다고 보았지만, 포터와 롤러는 높은 수준의 근무 성과가 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24. 정답 : ④

[해설] ① 산출물의 표준화가 조정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사업부제이다.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가 조정기제로 작용한다. ② 사업부제는 중간관리층이 강력한 유형이다. 최고관리층이 강력한 유형은 단순구조이다. ③ 애드호크라시는 복잡하고 동태적 환경에 적합한 조직으로 대개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25. 정답 : ②

[해설] ② 세수의 연도별 격차가 심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안정성의 원칙이다.

26. 정답 : ②

[해설] ①, ③, ④는 맞음 ② 사업소는 소속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보조기관에는 부단체장, 지방공무원 등이 있다.

27. 정답 : ③

[해설] ③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 정부측 교섭대표에 대해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28. 정답 : ②

[해설] 틀린 보기는 ㉠과 ㉣이다.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으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회수석전문위원, 광역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9. 정답 : ④

[해설]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시장실패의 거시적 원인에 해당한다. ① 규제자의 불완전한 정보 ② 관료의 권력·예산추구 ③X-비효율성. 이외에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근시안적 규제, 내부성(정부활동의 기준을 공익과 무관한 조직내부 목표로설정), 파생적 외부효과(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가 있다.

30. 정답 : ①

[해설] ① 시민의 선호를 반영하는 경쟁적 생산은 사회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케 하지만 반드시 행정내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이론의 의도도 아니다. 공공선택론은 조직내부의 생산성 제고보다 소비자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공급자 중심의 효율이 아님).

31. 정답 : ②

[해설] 수용(acceptance)이 내면적인 가치관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순응(compliance)은 외면적 행동에서의 동의만을 요구한다.(Duncan). 순응(불응)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정책대상집단, 중간매개집단, 일선관료 등이다. 택시합승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일선관료(관할 관찰)불응에 해당된다. 정책수단이 잘못 채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책을 아무런 불응없이 집행하더라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32. 정답 : ②

[해설] ②는 계급제에 대한 설명이다. 계급제는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 인사관리가 수월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3. 정답 : ②

[해설] 정책분석은 체제분석과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고,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며, 정책대안이 가져올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② 그러나 정책분석은 협상이나 타협 그리고 권력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대안을 분석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점증모형에서 말하는 정치적 타협·협상·합의와 달리 분석과정에 정치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합리모형에 속한다.

비 교	정책분석	체제분석
중 점	비용, 효과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	자원배분의 효율성 중시
대안기준	정치적 합리성 내지 공익(가치)	경제적 합리성
분석방법	질적 분석도 중시	계량분석 또는 비용편익분석
가치문제	기본적인 가치문제를 고찰	가치문제 다루기 곤란
활용과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정책학	경제학, 응용조사, 계량이론
기 타	정치요인 등 비합리적 요인 고찰	정치적 요인, 비합리적 요인 소홀

34. 정답 : ③

[해설] ① 예비비는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는 지출통제예산이다. ④는 예비비로서 회계연도 독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⑤ 이용은 입법과목 간의 융통이고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 회계연도 독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5. 정답 : ③

[해설] ③은 관료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조직과정모형(Ⅱ모형)은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연합모형)의 논리를 국가정책결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하위조직들은 수평적으로 독립되어있으며 각각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고자한다. 따라서 갈등과 타협이 불가피하며 준해결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조직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여 대응하기보다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SOP 발견에 주력하게 된다. ②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모형1)과 관련한 설명이다. 합리모형은 분석기법을 통해 발생확률을 예측함으로서 불확실성을 감소하려한다.

36. 정답 : ④

[해설] ① 교원이나 경찰직 등 특정직 공무원이 가장 많다. ② 국가 전체의 고용 중에서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 고용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 물론 정부산하단체의 고용까지를 포함하면 다르겠지만, "공무원"수만을 비교하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③ 계급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하고 있다.

37. 정답 : ②

[해설] 수용(acceptance)이 내면적인 가치관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순응(compliance)은 외면적 행동에서의 동의만을 요구한다.(Duncan). 순응(불응)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정책대상집단, 중간매개집단, 일선관료 등이다. 택시합승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일선관료(관할 관찰)불응에 해당된다. 정책수단이 잘못 채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책을 아무런 불응없이 집행하더라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38. 정답 : ①

[해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아무리 이들 자원을 최대로 가동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업무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배분적 효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즉 Pareto 최적 배분에서 벗어난 상태를 배분적인 비효율성이라고 한다(ex. 공무원을 부적절한 곳에 배치한 경우, 그가 최선을 다해 일하더라도 행정 업무의 성과는 낮다). 한편 생산요소가 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생산요소를 최대로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은 기술적 비효율성이라고 부른다(ex.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으나 사기저하, 게으름 등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비효율성). 생산요소가 최대한 가동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은 Leibenstein의 이른바 X-효율성과 같은 개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원의 재배치가, 후자의 경우에는 유인체계가의 확립이 필요하다.

39. 정답 : ③

[해설] 직무전문화는 능률성확대를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며, 직무순환은 직무상의 권태감이나 단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직무확대는 과업의 다양성을 수평적으로 늘리는 방법(수평적 직무부하)이고, 직무충실화는 상사의 직무를 위임받아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수직적 직무부하를 말한다.

40. 정답 : ④

[해설] ④는 전단은 맞으나 후단이 틀린 지문이다. 증감분석법은 모든 예산항목을 다 재검토하지 않고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사정하는 점증주의 방법이다. 따라서 증감부분만 분석되므로 역점사업이나 예산비중의 변화 파악은 용이하지만 증가된 예산항목에는 관심을 보이나 감소된 항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각 기관에 필요한 기본 예산액(base)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경찰학개론>

1. 정답 : ④

[해설] ㉠ 죄와형벌법전 - 1795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1794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1931 ㉣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 크로이쯔베르그 판결 - 1882 ㉥ 지방자치법전-1884

2. 정답 : ④

[해설] 경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공무원 임용자격이 없는 자

3. 정답 : ①

[해설]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전반을 의미했던 시기는 중세이고, 독일의 경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의 전반을 의미하였다.

4. 정답 : ②

[해설] ㉡㉢이 틀렸다. ㉡천부적 자연권은 시민에게 있지 국왕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로크는 제한군주정치를 옹호했다.

5. 정답 : ④

[해설] ㉠행정경찰은 경찰행정법규가 적용됨에 비하여,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경찰의 분류는 학문적, 이론적 분류이다. ㉢비경찰화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6. 정답 : ①

[해설]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7. 정답 : ③

8. 정답 : ①

[해설] "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9. 정답 : ②

[해설] ㉢공공의 신뢰에 위배된다.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행위로 편들기에 해당한다.

10. 정답 : ①

11. 정답 : ②

[해설] 포도청 ⇒ 경무청(1894) ⇒ 경부(1900) ⇒ (대)경무청(1902) ⇒ 고문경찰제도(1904) ⇒ 소경무청(1905) ⇒ 통감부경무부체제(1905) ⇒ 경시청(1907) ⇒ 통감부 내부 경무국체제(1907) ⇒ 한국경찰권의 상실(1910) ⇒ 경무총감부(1910) ⇒ 경무국(1945) ⇒ 경무부(1946) ⇒ 치안국(1948) ⇒ 치안본부(1975) ⇒ 경찰청(1991)

12. 정답 : ①

[해설] ㉠관찰사는 조선시대 지방장관이다.

13. 정답 : ③

[해설] ㉡행정규칙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실무상으로도 양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도 법규명령은 법조형식에 의하고, 행정규칙은 법조형식 또는 구술에 의한다.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과 같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함. ㉥판례는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대판 1990.1.25, 89누3564 등). 그런데 주의할 점은 최근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14. 정답 : ①

[해설] ㉤ 경감까지 승진 가능하다.

15. 정답 : ①

[해설] ②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③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4) ④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독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상이라고 특정을 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권자는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뿐이다.

16. 정답 : ②

[해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을 비상임 위원, 1명은 상임위원이다. ㉢ 경찰위원회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맞다.

17. 정답 : ②

[해설] ② 위임이 아니라 위탁이 맞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9조)

18. 정답 : ②

[해설] ㉡독일 연방재판소는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물적 하명은 이전·승계가 인정되지만 혼합적 하명은 효과의 이전·승계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자동차사용정지처분 등은 관할구역 밖까지 미친다.

19. 정답 : ③

[해설]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만 운전이 가능하다.

20. 정답 : ④

[해설]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모두 망라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다.

21. 정답 : ②

[해설] ㉡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통솔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22. 정답 : ④

[해설] ④ Briar와 Piliavin의 동조성전념이론이다. 이는 사람들은 행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유혹에 노출되며 노출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범죄를 행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벌의 두려움, 자신의 이미지, 사회에서의 지위와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려하는 동조성에 대한 전념을 가지고 있다.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탈경향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것을 전제로, 일탈은 관습적인 신념과 규범에 관한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한 사회통제기제의 결함 또는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23. 정답 : ③

[해설] 지정대리와 협의의 법정대리의 구별은 법정사실의 발생시에 대리자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느냐의 여부로써 협의의 법정대리는 법령에 대리자가 명시되어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4. 정답 : ②

[해설] ② Sheley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을 범행발생의 4가지 조건이라고 하였다. 특히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인'VIVA모델'의 내용은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이다.

25. 정답 : ④

26. 정답 : ④

[해설] ㉠경찰공무원의 무기 휴대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영리업무금지의무는 허가를 받아도 종사하지 못한다. ㉣판례는 민법 규정에 의해 3년으로 보았다.(163조), 다수설은 예산회계법규정에 의해 공권으로 보기 때문에 5년, 판례는 사권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이다. ㉤민사분쟁에의 부당 개입금지, 지정장소외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등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의 의무이다.

27. 정답 : ③

[해설] ㉡선고형이다. ㉢ ①벌금이나 과료의 경우 ②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 심판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예외적 불출석 심판이 가능하다. ㉤ 유치명령 있는 구류는 형확정전이라도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28. 정답 : ④

[해설]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은 임용은 경찰청장이 행하며.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29. 정답 : ④

[해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0. 정답 : ①

[해설] 테러리즘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상징적인 인물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심리적인 공포심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31. 정답 : ③

[해설]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

32. 정답 : ④

33. 정답 : ③

[해설] 정보활동의 법적 성격은 사실행위로서 임의수단에 의한 비권력적 작용이다.

34. 정답 : ④

[해설] 신원조사의 대상으로는 • 공무원임용예정자 • 비밀취급인가예정자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가 있다.

35. 정답 : ②

[해설] 2012도11162 적법절차를 위반한 음주측정거부죄와 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36. 정답 : ②

[해설] ㉡, ㉤ 질서유지인의 임명과 집회·시위의 종결선언은 집회의 주최자가 행하는 것이다.

37. 정답 : ②

[해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23조 제3항)

38. 정답 : ③

[해설]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공소보류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39. 정답 : ①

[해설]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② 동법 제17조 제2항

40. 정답 : ③

[해설]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외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도조약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문제나 답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경찰간부 <학원강의 <전국모의고사 <모의고사 이의제기, 에 이의 제기를 하여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 본 모의고사 문제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